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서영석 · 김남희 · 윤준병
허종식 · 서미화 · 남인순
박홍배 · 김 윤 · 노종면
채현일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광고 등 위법한 표시·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약국등광고의 금지 등) ①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약국에 관한 광고(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약국등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등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2.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4.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5.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이나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7.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8.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광고
9.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47조의6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

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3. 그 밖에 해당 약국등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등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약국등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한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제75조의2, 제76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약국등광고의 심의) ①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약국등광고가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단체는 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제2호에 따른 단체는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사회

2. 한약사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약국등광고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국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약국에 소속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약국등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⑥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⑨ 약국개설자가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약국등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의7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

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7(약국등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

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약사(藥事) 또는 약국등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47조의8(약국등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가 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제47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제95조제1항제8호의6을 제8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등광고의 금지 및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 및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등광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5(약국등광고의 금지 등)</u> <u>①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약국에 관한 광고(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약국등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u> <u>②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국등광고를 하지 못한다.</u> <u>1.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u> <u>2.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u> <u>3.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u>

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4. 해당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5.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이나 자신이 개설·운영 또는 근무하는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7.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8.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
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
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
는 광고
9.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
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
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
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
고
11. 제47조의6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
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창고”, “공장” 및 이와 같
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
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
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3. 그 밖에 해당 약국등광고의

<신 설>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등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약국등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위반한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제75조의2, 제76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약국등광고의 심의) ①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 약국등광고가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단체는 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제2호에 따른 단체는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하는 약국등광고의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사회

2. 한약사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약국등광고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국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약국에 소속된 약사 또는 한

약사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
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
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
하여야 한다.

⑤ 약국등광고 심의를 받으려
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
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는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3호
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
하는 약국등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
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

<신 설>

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 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약국개설자가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약국등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약국등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의7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7(약국등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
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
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

	<u>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약사(藥事) 또는 약국등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u>제47조의8(약국등광고 모니터링)</u> <u>자율심의기구는 약국등광고가 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75조의2(시정명령) (생략) <u><신 설></u>	제75조의2(시정명령)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신 설>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3. ~ 6. (생략)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 군수 ·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제47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① ----- -----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5. (생략) <u><신설></u> <u>8의6.</u> (생략) 9. ~ 12. (생략) ②·③ (생략)	-----. 1. ~ 8의5. (현행과 같음) <u>8의6.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u> <u>항을 위반한 자</u> <u>8의7.</u> (현행 제8호의6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